

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설립과 명칭) ① 이 정관은 대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 정관 제5 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(이하 “연맹” 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② 본 연맹의 명칭은 “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” 이라 하고, 그 영문은 “KOREA ELEMENTARY SCHOOL GOLF ASSOCIATION” (약칭 KESGA) 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맹은 초등학교의 골프 교육과 경기를 통하여 예절과 실력을 갖춘 우수 선수를 양성하고 초등학교 골프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연맹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또는 인근에 둔다.

제4조(사업) ①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연맹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·결정
2. 초등학생 골프대회의 주최 및 주관
3. 초등학생 골프 교실(학교) 개최
4. 골프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 통계
5. 골프 기술과 규칙의 연수
6. 본 연맹 경기위원 양성을 위한 교육
7. 국제 교환 경기 개최 및 참가
8. 그 밖의 골프 진흥 및 연맹 정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2호, 제7호의 사업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.

제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① 본 연맹은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이 인가하는 초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(비인가 학교 등 포함)로 본 연맹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친 학교(단체)로 구성한다.

② 연맹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조직할 수 있으나 각각 10개 단체 이상이 등록되어야 한다.

③ 연맹은 시·도 연맹체를 둘 수 없다.

④ 협회 전국규모연맹체조직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맹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권리와 의무) ① 본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
1. 협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2.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
3. 협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4.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할 수 있는 권리
5.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② 본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
1.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
2. 사업계획서와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의무

③ 본 연맹에 등록된 학교(단체)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
1. 연맹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2. 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
3. 연맹이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
④ 본 연맹에 등록된 학교(단체)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
1.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2. 연맹의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

제3장 총 회

제7조(총회의 구성)

① 총회는 30인 이상 50인 범위 내에서 정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.

② 등록된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(단체)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나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부 인사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③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 해당 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대의원이 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대의원의 임기는 1년(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)으로 한다.

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의원 수가 30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.

제8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원 가입 및 제명
2.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
3.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에 관한 사항
5. 연맹의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 사항

제9조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학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,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3.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4.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

④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,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⑦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

제10조(총회 의장) 연맹의 ~~장안~~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.

제11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② 위임장에 의한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.

제12조(임원의 불신임)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

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13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4장 이사회

제14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

① 이사회는 연맹의 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각종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6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중요 사항

제15조(이사회 소집) 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5일 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

자가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되고,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장 임 원

제18조(임원) ①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선임임원

㉠ 회장 1명

㉡ 부회장 7명 이하

㉢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

㉣ 감사 2명

2. 위촉임원

㉠ 명예회장 1명

㉡ 고문 약간 명

② 제1항의 임원에서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1명을, 이사 중에서는 전무이사 1명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제1호다목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의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이사로 한정)

④ 연맹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19조(선임임원의 선출) ① 회장은 학식과 덕망, 경험이 풍부하며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,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.

③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20일전

부터 14일전까지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
2. 회장 후보자 이력서 1부
3.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,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부회장 및 이사(전무이사 포함)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,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협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.

⑦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 초과 금지
2. 연맹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%이상 포함 노력
3. 생활체육관계자(선수 출신은 제외)가 재적임원수의 30%이상 포함 노력
4.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재적임원수의 40%이상 포함
5.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%이상 포함

⑧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(회장, 부회장 포함)의 2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1개 학교(단체)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

⑨ 감사는 행정감사 1명, 회계감사 1명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⑩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,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⑪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,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
제20조(명예직의 위촉임원 선출) 위촉임원 중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,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21조(선거의 중립성) ①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맹의 임·직원은 협회 및 시·도 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

며, 협회 및 시·도 골프협회 등 체육단체의 다른 임·직원, 대의원,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,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,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※ 규정 제22조 내용은 정관 19조에 포함 되어 있음

제23조(동일인의 겸직제한)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연맹체 또는 협회 내 다른 연맹체의 대의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
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연맹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 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.

제24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연맹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
3.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
⑤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, “회원단체, 시·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”(이하 “체육회 관계단체”라 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소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
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
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
⑥ 위촉임원 중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, 고

문 등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제24조의2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25조(임원의 임기) ① 선임임원의 임기는 4년(감사는 2년)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.

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,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, 인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8.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10.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(다만,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력·성폭력, 횡령·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)

11. 국회의원

12. 사회적 물의,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제27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
② 협회 정관 제5조의2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.

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9조제1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

2.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

3. 동일 종목의 시·도 협회 및 다른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

4.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
※ 규정 제27조의 2(명예직의 위촉)은 정관 제18조 ①항 2호와 제24조 ⑥항에 명시됨

제6장 각종 위원회

제2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연맹의 목적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(선수위원회 포함), 경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나 후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위원회의 장, 부위원장 포함)은 7명 이상으로 구성 한다.

제2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(협회의 해당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) 별도로 정한다.

제30조(스포츠공정위원회) ① 연맹의 제 규정 관리,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
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
2.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·직원인 사람

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‘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’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(재산)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부동산
2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3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
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한다.

제32조(재원) ① 본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2. 사업 수익금
3. 지원금 및 보조금
4. 회비(회원 등록비, 대회 참가비 등)
5. 후원금(후원물품 포함)
6. 기타 수입금

②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연맹에 가맹한 가맹 학교(단체) 및 개인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
제33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차기 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

제34조(재산의 관리)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, 또는 연맹이 재정적·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, 차입금(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)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.

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재산의 대여 및 사용)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 및 시·도종목단체의 임·직원
2. 연맹의 임·직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(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)
3. 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 및 시·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
제36조(회계연도)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(예산 편성 및 결산) ① 매 회계년도 시작 전 ‘사업 계획과 예산(안)’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,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

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회계 감사 등) ① 연맹은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본 연맹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처리는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8조의 2(협회의 감사·징계 등)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·감사할 수 있다.

② 연맹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협회에 조사·감사를 요구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·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단체는 협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.

제8장 사무국

제39조(사무국의 운영) ① 본 연맹은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국장(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)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⑤ 연맹 임원의 친족은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.

⑥ 사무국의 구성, 인사,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며,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제9장 보칙

제40조(해산) 연맹은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협회의 설립 승인 취소로 해산한다.

제41조(정관 변경) ①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,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협회가 연맹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·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2조(규정 제·개정 등) ① 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조직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·개정한다.

③ 연맹의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3조 (규정의 해석) 본 연맹 정관이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조직규정과 상이할 경우, 그 해석은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조직규정이 우선하며, 연맹의 정관을 전국 규모연맹체조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국규모연맹체조직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44조(제한사항) 연맹이 협회의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조직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의 협회에 대한 권리사항을 제한(정회원단체의 경우,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)하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45조(경영공시)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와 정관 및 각종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.

부칙<제정 2003. 7. 1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대한골프협회가 승인한 날(2003. 7. 10.)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<1차개정 2012. 6. 4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대한골프협회가 승인한 날(2012. 6. 4.)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차개정 2018. 3. 0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대한골프협회가 승인한 날(0000. 00. 00.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 본 연맹의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에는 이 개정 정관 시행 이전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.

부칙<2019.00.00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대한골프협회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 ① 본 연맹의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에는 이 개정 정관 시행 이전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.

② 이 정관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.